변 경 대 비 표

2024.10.31

ㅇ 펀 드 명 : 흥국퇴직연금멀티증권자투자신탁4호[채권]

ㅇ 정정사유 :

1) 집합투자기구 정기결산에 따른 정정
2) 기업공시서식 개정 반영
3) 모투자신탁 변경사항 반영
4) 금융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2024.8.1시행 / 종류 S-pr 수익증권 정의 변경)

ㅇ 상세내역 :

[집합투자규약]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금융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	①~③ (생 략) ④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3. 종류 S-pr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사용자 및 가입자 4. (생 략)	①~③ (현행과 같음) ④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현행과 같음) 3. 종류 S-pr 수익증권: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사용자 및 가입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수익증권 4. (현행과 같음)

[증권(일괄)신고서/투자설명서]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 집합투자기구 정기결산에 따른 정정 **2) 기업공시서식 개정 반영** **3) 모투자신탁 변경사항 반영** **4) 금융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	[요약] - 투자비용 - 투자실적추이 - 운용전문인력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나. 환매 **<별첨 3>**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 운용자산 규모		
[요약정보]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금융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	[판매 경로] 온라인 슈퍼(S)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 슈퍼(S) :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금융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	[판매 경로] 온라인 슈퍼(S)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 슈퍼(S) :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모펀드 변경사항 반영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대상] 흥국멀티플레이증권모투자신탁[채권] [채권]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대상] 흥국멀티플레이증권모투자신탁[채권] [채권]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

		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다만,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다만,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집합투자기구 정기결산에 따른 정정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	이 투자신탁은 설정일 이후 3년이 경과된 집합투자기구로써 최근 3년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이 1.05%이므로 6등급 중 5등급 (낮은 위험)으로 분류됩니다. **<별첨 1>** 최근 결산일 기준 설정된 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 분류기준 ※ 수익률 변동성의 의미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이란 투자기간 동안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평균수익률과 대비하여 변동한 범위를 측정하기 위한 통계량으로서, 투자신탁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 값이 클수록 미래 수익률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투자신탁의 위험이 커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의 수익률 변동성을 측정하여 위험등급을 산정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설정일 이후 3년이 경과된 집합투자기구로써 최근 3년 실제 수익률 변동성(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97.5% VaR 모형 사용))이 1.77%이므로 6등급 중 5등급(낮은 위험)으로 분류됩니다. **<별첨 2>** 시장위험 등급 기준표(97.5% VaR 모형* 사용) (운용기간 3년 경과한 경우) * 과거 3년 일간 수익률에서 2.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250)를 곱해 산출 * VaR(Value at Risk)는 포트폴리오 손실 위험 측정을 위해 이용되는 위험 측정수단입니다. 상기 표상 VaR값 OO%의 의미는 펀드의 과거 3년 동안 일간수익률을 고려 시 최대 OO%의 손실(신뢰구간 97.5%)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금융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r)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사용자 및 가입자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r) :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사용자 및 가입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수익증권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금융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r)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사용자 및 가입자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r) :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사용자 및 가입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수익증권

<별첨 1>

위험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매우높은위험	높은위험	다소높은위험	보통위험	낮은위험	매우낮은위험
표준편차	25%초과	25%이하	15%이하	10%이하	5%이하	0.5%이하

<별첨 2>

위험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매우높은위험	높은위험	다소높은위험	보통위험	낮은위험	매우낮은위험
97.5% VaR	50%초과	50%이하	30%이하	20%이하	10%이하	1%이하

<별첨 3>

※ 환매 가능 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

중도환매불가	중도환매시 비용 발생	중도환매 허용
-	-	O

[간이투자설명서]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 집합투자기구 정기결산에 따른 정정 **2) 금융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	[요약] - 투자비용 - 투자실적추이 - 운용전문인력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요약정보]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금융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	[판매 경로] 온라인 슈퍼(S)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 슈퍼(S) :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